

청주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가합5022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 이요한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인석진, 장현선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7. 22.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2,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3. 체결된 지분포기 및 양도계약을 332,15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2.경부터 2015. 11. 3.경까지 피고 B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342,156,000원을 대여했다가 332,156,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와 D, E는 2012. 5. 30. F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각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로 등기된 피고 C와 D, E는 2012. 5. 30. G,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 5명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 인 서

부동산의 표시: 충북 청원군 I외 3필지

명의자: C, D, E, G, H

내용: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C, D, E의 명의만 등기부등본상에 표시함으로 G, H은 확인서로 본 부동산의 명의가 있음을 공동으로 확인한다. 단 본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C 외 4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되 차후에 5명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건물에 대한 공사가 있을 경우 공사비 또한 공동으로 투자한다. 또한 건물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각 투자자 5명의 합의하에 이익금, 세금 배분까지 공동으로 정산한다. 단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생기면 J회사 B, K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각 투자자 C, D, E, G, H은 위 내용을 지킬 것을 각서하며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본 확인서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중도에 위 내용을 위반하고 투자금 반환은 누구라도 할 수 없으며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경우는 각 5명이 상의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 B는 2014. 11. 17. H과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합의서

H을 '갑', B를 '을'이라 칭하고, '갑'과 '을'은 2008부터 지속해온 사실혼 관계를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 다 음 -

1. '갑'과 '을'은 본인들의 결정에 의거 2008년부터 지속해온 사실혼 관계를 쌍방합의 2014년 11월 17일자로 종료기로 한다.
  2.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 '을'소유로서 '갑'은 '을'명의로 소유권 및 권리이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협조한다.
  3. 청주시 흥덕구 L아파트당지사가 M호(시세 1억7천만원)는 '갑'소유로한다.
  4. '을'은 '갑'에게 청주시 흥덕구 L아파트 33평형을 사준다. 단, 청주시 흥덕구 N 부동산을 '을'이 매각후 잔금수령금으로 '갑'에게 아파트를 사준다.
  5. '갑'이 '을'로 소유권이전 및 권리 이전해야 할 항목
    - 1)~4) (생략)
    - 5) 청주시 흥덕구 I, O, P, P '갑'의 지분
    - 6)~8) (생략)
- 상기 리스트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 '갑'은 '을'로 조건없이 소유권이전 해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업무일체를 협조한다.

마. 피고 B는 2016.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피고 C에게 모두 넘기는 것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권리포기각서

부동산의 표시: 충북 청원군 I외 3필지

내용: 본인 B는 위 부동산이 5인 지분건 중 1개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일체 포기하며, 이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합니다. 본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평당 일금 사백만원정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그 어떠한 행위 매매에 따른 그 어떠한 행위도 B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C에게 모두를 넘기는 것으로 확약하며,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다. 추후에 이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바. 피고 C는 2017. 6. 2. 피고 B를 상대로 ‘B에게 2011. 11. 30.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278,35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2017차16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7. ‘B는 피고 C에게 278,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6. 27. 확정되었다.

사. 피고 C와 Q(피고 B에 대한 370,000,000원 채권자)은 R을 상대로 ‘피고 B와 R이 2015. 11. 30.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고등법원(청주지부)은 2022. 5. 11. 위 매매계약을 피고 C, Q의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송달받고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332,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 C의 주장 요지

원고는 R의 부탁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 R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 피고 B의 다른 채권자 E가 R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 및 권리포기각서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19. 12. 19.경에는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는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내용이나 증거 제출 경위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 별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나 피고 C와의 관계,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작성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 C도 피고 B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라는 별건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2. 19.경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인 2016. 1. 23. 다른 채권자들 모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5분의 1 공유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 C

피고 C와 D, E, G, H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각출하여 F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C, D, E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는 5인이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합유'라고 할 것이다. 민법 제272조, 제273조에 따라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H은 합유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B가 소유하지도 않은 지분을 포기한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는 피고 B에게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단독행위에 불과할 뿐, 피고 C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볼 수도 없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은 피고 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작성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가 있고, 그에 부합하는 등기가 마쳐져야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C, D, E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을 뿐, G, H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피고 B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지도 않았다. 결국, 등기명의자들과 위 G, H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유 또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뿐이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5명의 관계를 ‘합유’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H은 다른 합유자들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는 민법 제272조, 제273조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지분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5명의 관계를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피고 B는 명의신탁자인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5분의 1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는 H을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을 뿐, 이 사건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지분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곧바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책임재산이 되므로, 채무자인 신탁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75 판결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신탁자로서 사해행위를 한 것인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신탁자와 제3자 사이에 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명의신탁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56121 판결 참조), H과 피고 B 사이에 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H의 신탁자로서의 지위가 피고 B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호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 B 소유로서, H은 B 명의로 소유권 및 권리이전 하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실은 H이 아니라 피고 B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라거나 실질적 소유자라고 보기 부족하다.

⑥ 위와 같이 피고 B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B가 H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채권포기 또는 채권양도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그 이익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 B가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인 H이므로, 피고 C를 수익자로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에 ‘피고 B가 지분을 피고 C에게 넘기는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은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작성일과 같은 날 피고 C에게 직접 자신의 권리를 넘기면서 피고 C로부터 대가를 교부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의 기재만으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특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피고 B의 H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부터 이 사건 권리포기각서 작성일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 B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H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5인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점, H은 자신이 직접 피고 C에게 지분권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H에 대한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강현호, 판사 이종인

별지